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이영실 의원 외 17인
- 나. 의안번호 : 제2160호
- 다.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5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2. 제안이유

- 서울에너지공사가 인사, 재무 등 공사 경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게 되어있는 현행 규정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6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설립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 임직원, 이사회, 재무회계, 자본금,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제56조제1항 및 제3항1)).
- 안 제6조제2항은 정관변경에 있어 시장의 인가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 절차를 추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서울시 산하 21개(공사·공단 5개, 출자·출연 16개) 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일관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을 것임(참고자료 참조).
- 다만,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독립된 법인격<sup>2)</sup>을 가진 법인인바, 정관변경 사전 보고가 공사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임.

---

1)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참 고]

### 1. 서울시 공기업·공단

연 번	기 관 명	근거조항	근거조항 제·개정일
1	서울주택도시공사	제6조(정관)제2항	'12.12.31.(개정)
2	농수산식품공사	제5조(정관)제2항	'12. 7.30.(개정)
<b>3</b>	<b>서울에너지공사</b>	<b>없음</b>	-
4	서울교통공사	제5조(정관)제2항	'21. 5.20.(개정)
5	서울시설관리공단	제5조(정관)제2항	'12.12.31.(개정)

### 2. 서울시 출연·출자 기관

연 번	기 관 명	근거조항	근거조항 제·개정일
1	세종문화회관	제6조(정관)제2항	'12.12.31.(개정)
2	서울의료원	제10조(지도·감독 등)제3항	'12.12.31.(개정)
3	서울산업진흥원(SBA)	제6조(정관)제2항	'12.12.31.(개정)
4	서울신용보증재단	제7조(정관)제2항	'12.12.31.(개정)
5	서울여성가족재단	제5조(정관)제2항	'12.12.31.(개정)
6	서울복지재단	제6조(정관)제3항	'12.12.31.(개정)
7	서울문화재단	제5조(정관)제2항	'12.12.31.(개정)
8	서울시립교향악단	제6조(정관)제2항	'16. 9.29.(제정)
9	서울디자인재단	제5조(정관)제2항	'12.12.31.(개정)
10	서울장학재단	제8조(정관)제2항	'12.12.31.(개정)
11	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정관)제2항	'17. 5.18.(제정)
12	50플러스재단	제7조(정관)제2항	'15.10. 8.(제정)
13	서울디지털재단	제6조(정관)제2항	'16. 1. 7.(제정)
14	120다산콜재단	제5조(정관)제2항	'16. 9.29.(제정)
15	서울관광재단	제5조(정관)제2항	'18. 1. 4.(제정)
16	서울연구원	제2조(설립)제4항	'19. 5.16.(개정)